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4. 5. 3.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2. 제안이유

-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군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명시 및 예산 지원(안 제5조)
- 지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안 제7조)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홍보(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진로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지자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사업의 범위 등)에서 우리 군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연계망 구축) 및 제8조(홍보)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한 과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창의·인성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¹⁾ 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권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1)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출도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